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성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문판매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률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구하거나”를 “요청하거나”로, “요구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2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구하거나”를 “요청하거나”로, “요구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구하거나”를 “요청하거나”로, “요구할”을 “요청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보고 및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u>보고하여야</u> 한다.	제47조(보고 및 감독) ① ----- ----- ----- ----- -- <u>통보하여야</u>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u>요구하거나</u>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u>요구할</u>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u>요청하거나</u> ----- ----- <u>요청할</u> ----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 ----- ----- ----- ----- ----- <u>통보하여야</u>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u>요구하거나</u>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u>요구할</u>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u>요청하거나</u> ----- ----- <u>요청할</u> ----- -----. -----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보고 및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7조(보고 및 감독) ① ----- ----- ----- ----- -- <u>통보하여야</u>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u>요구하거나</u>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u>요구할</u>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u>요</u> <u>청하거나</u> ----- ----- <u>요청할</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4264